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10. 7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10. 7
- 다. 상 정 일 자 : '97. 10. 22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최 영 옥
- 나. 개정사유

- 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군으로의 환원하거나 새로이 읍면으로 위임하는등 군·읍면간 사무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위임사무의 위임 및 적용근거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위임사무의 소관을 화순군조례 제1494호('97. 7. 18)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화순군규칙 제890호('97. 8. 12)로 공포된 화순군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바로잡기 위함임.

다. 주요내용

■ 제2조(위임사항)의 별표중

첫째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등에 따른 사무위임 소관 변경은

- 산업과 소관 "농지전용신고수리"사무와 건설과 소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 사무를 신설된 농업정책과 소관 읍면 위임 사무로

둘째 : 군·읍면간 사무배분의 합리적 재조정은

- 재무과 소관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는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군세의 납세고지서 교부"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군유 잡종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자료조사 군유잡종
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자료조사 군유잡종재산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 "군유 잡종재산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독려"
"군유 은익재산 발굴" 사무 읍면 위임.

- 지적과 소관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사무 읍면 위임
-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 읍면 위임
-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 및 변경"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도 감독" 사무 읍면 위임.

셋째 :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은

- 재무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민원봉사실
소관 위임사무로 조정
- 건설과 소관 읍면위임사무중 "2,000만원 이하 공사 시행"을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소관을 실과소
공동 위임사무로 조정하였고,

넷째 : 상위관계법령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 도시주택과 소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길중)

-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화순군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를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생 략 "

첨 부 :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113
----------	----------

제출년월일 : 1997. 10. 7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군으로의 환원하거나 새로이 읍면으로 위임하는등 군·읍면간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위임사무의 위임 및 적용근거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위임사무의 소관을 화순군조례 제1494호('97. 7. 18)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화순군직제규칙 제890호('97. 8. 12)로 공포된 화순군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바로잡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제2조(위임사항)의 별표중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등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변경
 - 산업과 소관 "농지전용 신고수리"사무와 건설과 소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 사무를 신설된 농업정책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로
 - 군·읍면간 사무배분의 합리적 재조정
 - 재무과 소관
 -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
 - °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군세의 납세고지서 교부",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군유 잡종 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자료조사", "군유 잡종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군유 잡종재산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독려", "군유 은익재산 발굴"사무 읍면 위임.

- 지적과 소관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사무 읍면 위임
-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 읍면 위임
-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및 변경",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도 감독" 사무 읍면 위임
-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재무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민원봉사실 소관 위임 사무로
 - 건설과 소관 읍면위임사무중 "2,000만원 이하 공사 시행"을,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소관을 실과소 공통 위임 사무로 함.
- 상위관계법령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 도시주택과 소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로 개정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중 "별표 권한위임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감독)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감독) <u>전조</u>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u>군</u>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3조(감독) <u>제2조</u>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u>군수</u>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 지휘 감독하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권 한 위 임 사 항

실 과 소 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기 관	비고
실과소통	1. 추정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	읍 면	건설과
문화공보실	1. 공연신고 2. 한천농악 전수회관 관리운영	○ 공연법 제14조 제2항 ○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읍 면 동북면	
민원봉사실	1. 인장업 신고사무 2.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 인장업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읍 면 "	재무과
내무과	1. 읍면 6급이하 공무원 정기호봉 승급 2. 읍면 6급이하 공무원 휴직발령 3.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4. 읍면 계장 및 출장소장 보직 발령 5. 읍면 8급이하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 제청 6.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 해제 7. 이 행정 지도 8. 문서보관 및 폐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6조 제3항 ○ 사무관리규정 제28조 제31조	읍 면 " " " " " " "	
재무과	1.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군세의 납세고지서 교부 3.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4.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5. 공유 잡종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에 따른 자료 조사	○ 지방세법 제4조 및 화순군군세조례 제6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읍 면	신 설

권 한 위 임 사 항

실 과 소 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관	비고
	6. 공유 잡종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7. 공유 잡종재산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독려 8. 공유 은익재산 발굴	○ 화순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조	읍 면	신설 신설 신설
지적과	1.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관리대상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허가 또는 소유권 표시사항은 제외)	○ 건축법 제9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읍 면	신설
사 회 복지과	1. 위생 접객업소 지도 2.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3.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금품 지급 4. 노임소득사업 취로대상자 선정 5. 노임소득사업(직영) 집행 6. 영세민 취로사업장 지도감독 7. 매장·개장·화장 신고 8.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 공중위생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17조 ○ 생활보호법 제17조 ○ 생활보호법 제9조 ○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읍 면 " " " " " "	신설
환 경 보호과	1.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 2. 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72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에 관한 업무 3. 공공하수도 관리(도시계획구역 내) 4.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화순군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0조,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 ○ 하수도법 제7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5조	읍면 " " "	

권 한 위 임 사 항

실 과 소 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기 관	비고
	5. 수도폐전 신청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	
	6.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 및 변경	○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11조	"	신설
	7.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도 관리	○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	"	
	8. 개입급수전 설치허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	
	9. 급수사용료의 이의신청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	
	10.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	
	11. 급수신고 업무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제1항	"	
	12. 급수장치 관리의무 승계업무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	
	13. 수도사용료 감액 신청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	"	
	14. 급수공사의 승인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	
	15.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2	"	
	16. 급수공사의 시행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	"	
	17. 급수공사의 준공검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2	"	
	18.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5조	"	
	19. 상수도 요금의 조정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	

권 한 위 임 사 항

실 과 소 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기 관	비고
	20.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21. 정수 처분 22. 급수장치 철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0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	읍면 " "	
농 업 정책과	1. 농지전용신고 수리 2.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시설물 사후관리	○ 농지법 제37조, 농지법 시행령 제40조, 농지 전용 업무처리세부규정 제38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	읍면 "	산업과 건설과
산업과	1. 수도요금 공동방제사업 2. 수도비배관리 및 지도 계몽 3. 농약공급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 "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	읍면 " "	
산림과	1. 신고에 의한(임야외) 임목 벌채 2. 가로수관리 3. 입산신고	○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10호 ○ 산림청예규 제302호 (87. 1. 3) ○ 산림법 제98조	읍면 " "	
지 역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 화순군시장운영관리 조례 제5조	읍면	
건설과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 3.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읍면 " "	

권한 위임 사항

실과 소명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비고
도시 주택과	1. 토지 출입허가	○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읍면	
	2. 토지형질변경 허가 (1,000㎡이하) 및 단속 조치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92조 제1항	"	
	3. 무허가·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 건축법 제69조 제1항	"	
	4. 연면적 85제곱미터 (건축법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5.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다만, 동조동향동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6.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7. 죽목의 식재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8.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5호 별표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병원, 슈퍼마켓, 금융업소 및 학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9.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 천막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10.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9조	"	
	11.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5조 제2항	"	

권한 위임 사항

실과 소명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 기관	비고
	12.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72조	읍면	
보건소	1. 대만 재배허가등 2.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 업무 3. 배정 범위안의 방역약품 유통 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등	○ 대마관리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4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읍면 " "	